

#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

(이재화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3. 03. 03.

발의의원 : 이재화, 김대현,  
김재용, 김정옥,  
김태우, 손한국,  
이재숙, 이태손,  
육정미, 조정구,  
전경원 의원(11명)

## 1. 제안 이유

현재 우리사회가 정보통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디지털 사회로 급변함에 따라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디지털을 통한 각종 정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역량을 높이는 교육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디지털 문해력 교육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 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 다. 기 타 :

##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란 디지털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활용 능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고, 교육 제공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2.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학생 교육 지원

3.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자료·교재 등의 개발 및 지원
4. 디지털 문해력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5.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대상 디지털 문해력 수준 및 교육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관 계 법 령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 17. (생략)

###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원격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